

**미국 언론의 소송 승소율 상승
2005년도 배상액은 과거 20년보다 낮아져**

- 미 MLRC, 연차보고서 통해 발표 -

미국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소송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보도기관의 손해배상금액은 과거 20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손해배상금액에서 차지하는 징벌적 배상액의 비율도 과거 25년을 통틀어 최저인 3.5%로 나타났다고 미국 미디어법 자료센터(MLRC)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25년과 비교해서 지난 2005년의 소송 건수는 감소되었고 보도기관 측의 승소는 증가했다. 2005년의 보도기관 측 승소와 패소는 똑같이 각각 7건이었으며 배상액의 증가 경향도 주춤해졌다.

MLRC는 1980년부터 명예훼손소송 조사를 시작했다으며, 이번 보고서는 8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31건의 소송을 분석한 자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도기관의 승소율은 1980년대 36.3%, 90년대 40.2%,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은 53.8%로 점차 높아졌으며, 지난 25년간 전체를 보면 약 40.3%에 해당하는 214건에서 보도기관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소심에 한정하면, 80년대 이후 보도기관 측이 배상을 명령받은 것은 5건 중 1건 이하(18.7%)의 낮은 비율이다.

2005년의 배상액 평균은 36만 9,000달러(약 3억 7,000만 원)이나 보도기관이 패소한 7건의 배상액 평균은 7만 5,000달러(약 7,500만 원)다. 과거 25년간의 배상액 평균은 80년대의 150만 달러(약 15억 원)에서 90년대에는 500만 달러(약

50억 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의 배상액 평균은 280만 달러(약 28억 원)였다. 평균액 상승의 요인은 다우·존스사에 대해 2억 2,270만 달러(약 2,300억 원)라는 고액의 배상청구가 인정된 데 있다.

과거 10년간의 손해배상 가운데 92.7%가 징벌적 배상이 아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나타났으며 80년대에는 징벌적 배상이 약 60%였다.

(『신문협회보』 2006년 4월 4일자) □

**외설장면 방영한 CBS에
최대 규모의 벌금 부과**

- 미 FCC -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3월 15일, 미국의 CBS 텔레비전과 관련 100개 이상의 계열국에 360만 달러(약 3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FCC는 CBS가 지난 2004년 12월에 방송한 범죄드라마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 등의 '외설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했기 때문이라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벌금 총액은 외설을 이유로 부과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 FCC는 지난 2005년 1년간은 방송국에 대한 벌금명령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케빈 마틴 위원장 취임 이후 미디어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는 명확하게 보여 왔다.

한편 FCC는 2004년 슈퍼볼 경기 중간 행사에서 인기가수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을 그대로 방영했다는 이유로, CBS 측에 총액 55만 달러(5억 5,000만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4월 4일자) □

같은 법원 재판부가 「취재원 비닉」에 대한 상반된 판단 내려 논란

- 신문협회·민방련은 긴급 공동성명 통해 반발 -

미국의 건강식품회사가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촉탁증인신문에서, 일본의 관련 3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원에 관한 증언 거부의 당부(當否)를 둘러싸고, 도쿄 지방법원 민사 제39부는 「취재원 비닉(秘匿)」에 대해 언론사 별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에 취재원 비닉을 부정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신문협회와 민간방송연맹이 지난 3월 17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론기관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소송은 1997년 10월 10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 조간과 교도(共同)통신, NHK 등이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의 소득 은폐가 미·일 양국세당국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되었다. 식품회사는 기사에 의해 신용이 실추되었으며 “일본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식품회사 소송의 촉탁증인신문에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교도 통신, NHK의 기자들 모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3개 법원의 판결과 신문협회·민방련의 긴급 공동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쿄 지법 민사 제39부는 지난 3월 14일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기자가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비(守秘) 의무 위반이 되는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재원의 비닉은 인정될 수 없다”고 신문사의 질문 항목 태반에 대해 증언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촉탁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 21개 항목 중 ‘기사의 정보원은 누구인가’ 등 7개의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는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 직원의 어느 누가 기사의 정보원인가’ 등 14개의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원이 민사소송법상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기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취재에서 그 수비 의무에 저촉되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그 경우 “취재원의 공개를 명령하면 그 이후 같은 취재원으로부터의 협력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예상되나, 그것은 형벌법령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질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판시했다.

▲ 이와는 반대로 도쿄 고법 제9민사부는 지난 3월 17일 식품회사 측의 신청을 각하한 니이가타 지법의 결정을 지지,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취재원에 관해 증언을 강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식품회사 측의 즉시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기관의 취재활동을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에 불가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적인 활동”이라고 인정하고, 취재원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비닉하기 위한 증언 거절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취재에 대해서는 1978년 5월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답습했다.

▲ 한편 교도 통신사 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증언 거부의 당부(當否)를 둘러싼 공판에서 도쿄 지방법원 민사 제39부는 요미우리 신문 기자의 경우와는 달리 증언 거부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재원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증언 거절은 직접 취재원 자체를 묻는 질문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취재원의 특정(特定)에 결부되는 질문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41건의 질문 가운데 취재원의 인원수 등을 신문한 10건에 대해서는 증언 거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 통신 기자와 식품회사는 모두 즉시 항고를 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1978년의 외무성 비밀전문 입수를 둘러싼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기자가 공무원으로부터 수비(守秘) 의무위반이 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취재원의 비닉(秘匿)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相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신문협회 · 민방련 성명요지

취재와 보도의 손발을 묶는 결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결정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취재원(정보원)의 비닉」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저널리즘의 철칙이다. 숨겨진 사실·진실은 기자와 정보제공자간에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있음으로서 밝혀낼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을 기자 측에서 어기는 것은 정보제공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용기와 양식을 갖고 있는 정보제공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보도기관에 공권력에 대한 '취재·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최저필요조건이다. 취재원 비닉을 부정하는 이번 결정은 1978년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3월 21일자, 5월 2일자)□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판결

- 손해배상 및 공표 금지 가처분 판결 내려 -

재규어 포물러원(F1)팀의 전 대표였던 토니 퍼넬이 『비즈니스 F1』 잡지와 이 잡지의 편집장인 톰 루비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퍼넬은 『비즈니스 F1』이 자신이 기자를 매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 잡지사와의 해당 편집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웠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인 에이디 판사는 잡지사와 편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퍼넬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에이디 판사는 『비즈니스 F1』 측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공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퍼넬의 변호인인 스틸스 법률사무소의 도미닉 크로슬리는 "에이디 판사는 『비즈니스 F1』에 보도된 주장들을 잡지사와 편집장이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퍼넬은 『비즈니스 F1』이 보도한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6년 3월 24일자) □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 영국 법원 판결 -

영국 법원의 블랙번 판사는 자신의 사적인 기록을 기사에 인용한 것은 사생활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찰스 왕자가 ‘메일 온 선데이’(Mail on Sunday, 이하 Mo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관인 블랙번 판사는 “찰스 왕자가 지난 1997년 7월, 영국의 홍콩반환 뒤 쓴 개인 저널의 일부분을 기사에 인용한 것은 찰스 왕자의 저작권과 사적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블랙번 판사는 MoS에서 입수한 찰스 왕자의 7개의 또 다른 저널들을 기사에 인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심의를 열어 MoS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상대로 개인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승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블랙번 판사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지난 1998년의 인권법령 중 두 가지 조항, 즉 8번 조항(사생활)과 10번 조항(표현의 자유)을 놓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랙번 판사는 “피고인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 것은 10번 조항에 쓰여 있듯 매우 중요하며 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역할이 중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10

번 조항은 자유를 누리려면 그의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은밀하게 받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oS는 “찰스 왕자의 기록은 결코 ‘은밀하게 입수한 사적인 정보’가 아니”며 “왕자의 공적 생활을 다룬 내용이므로 대중의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MoS는 익명의 소스를 통해 “왕자의 사무실에서는 비밀로 여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블랙번 판사는 “개인 기록 공개의 목적이 정치적 영향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개인 기록에 ‘사적인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고 해당 기록 수취인의 숫자(75명)는 해당 기록이 비밀로 남겨져야 함을 증명할 만큼 적은 인원”이라고 밝혔다. 또 블랙번 판사는 찰스 왕자의 기록이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MoS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행위나 위선적 행동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다른 7개의 기록 역시 찰스 왕자가 사적으로 남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번 판사는 “다른 7개의 기록이 보도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MoS 측은 항소할 방침을 내비쳤고 다른 7개의 기록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S는 “왕자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가 하는 일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홍콩반환 후 쓴 기록 관련 항소심은 신문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다른 7개의 기록에 대한 재판에서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6년 3월 24일자) □